

# 제60대 중앙운영위원회 회의록

차수	25차 정기
일시	18. 08. 20 14 : 00
장소	총학생회실

참석확인 (11/13)

간호	경경	공대	사범	사과	약학	예술	인문	의학	자연	동연	부총	총
○	○	○	○	○	○	○	○		○	○		○

## □ 보고 안건

### 1. 대표자 대상 성평등 교육(2018-08-28 14:00~16:00)

: 반성폭력 회칙 개정 관련 설명 예정(약 30분). 단위별 참석자 명단 이번 주 금요일(24일)까지 송부 요청(학과, 학번, 단과대, 이름).

### 2. 2018 가을축제 C:autumn

: 일정 내 참여단위 조사 중. 단과대별 체육대회 관련, 공간조정회의에 단과대별 대표자 참석하여 공조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양해 구하며 관련 안내 하는 것 추천.

### 3. 가을농활 일정

: 10월 6일(토) ~10월 9일(화) 진행 예정.

## □ 논의 안건

### 1. 반성폭력 회칙 개정 초안

1.1. 1-3 질의서 관련 조항 ⇒ 1-3 질의서 조항을 제외하여 이번 개정을 시도하며, 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해당 조항을 논의할 것. (9/10 찬성)

: 법전원 면담 결과, 질의서 의무화가 개인 자유의 권리(양심의 자유 등)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피드백 있었음.

-인문대학: 성평등위원회 작성, 이후 절차를 중선관위가 맡아 질의서를 송부함으로써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음. 학생자치 발전에 이로운 방향이며, 이것이 의무화되지 않을 경우 유명무실화 될 위험. 질의서에 대한 부담으로 인한 비상대책위원회(이하 비대위) 형성을 염려하는 부분에서, 후보가 관련 소양을 가지지 못한 상황이라면 오히려 비대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. 각 단과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진행된다면 성평등위원회가 작성하는 수준의 질문이 나오기 힘들 것.

-사회과학대학: 각 선거의 선거관리위원회가 성평등위원회에서 제작한 것을 보고 선별하여 질문지를 송부하는 것이 좋을 것.

-총학생회: 관련 조항이 회칙에 명시된다면, 총학생회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(이하 중선관위)가 질의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긍정적일 것. 질의서를 진행하고 싶지 않은 단위에서는 성평위에 요청할 수 있을 것. 현재 해당 조항에 대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므로, '의무' 또는 '권고'의 수준을 단순히 의결로 정하기 어려움. 이번 개정에서 해당 조항을 빼고 선거 전까지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방향이 되어야 함.

-동아리연합회: 질의서 관련 조항으로 인해 중선관위가 단과대학 선거에 개입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음. 응답의무는 권고/자율로, 이외 절차는 중선관위에 의한 것이 가장 합당.

-공과대학/창의ICT공과대학: 선거에서는 각 단위의 자율성을 고려해야 하므로 강제성을 띠어서는 안됨. 선거 후보자의 공약을 더 많이 보아야 하는데 질의서 관련 내용에 관심이 치중될 우려도 있음. 각 단과대별로 이슈가 되거나 중요시되는 부분이 다르기에 일괄적인 질의서에 대한 답변은 단순한 비교지표가 될 위험성도 있음. 이러한 우려를 덜기 위해서는 적어도 각 단위에서 게시에 대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할 것.

-경영경제대학: 학 단위의 고유한 학생자치를 침해할 수 있을 것. 질의서에 대한 내용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것을 성평위 또는 중선권위에 맡길 필요가 없음. 단과대학별 선거 시행세칙에 추가하는 방향도 괜찮을 것. 단위별 특성에 따라 선거 진행에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음. 각 선거운동본부 역시, 스스로의 소신과 생각을 대중적인 기호에 맞추어 쓸 수 있고, 이러한 상황에서는 질의서의 의미가 퇴색됨. 외부의 평가와 독립적으로, 관련 내용은 각 단위의 자치에 의해 정해져야 함.

-예술대학: 의무 및 권고 역시 부정적. 각 단위의 선거관리위원회의 자율성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라 것. 해당 내용에 대해 본인의 생각을 밝히는 것 역시 후보자의 자율이 되어야 함.

-자연과학대학: 젠더 감수성, 인권에 대한 담론은 단과대별 특성에 의해 갈릴 수 없음. 중앙운영위원회 내 합의가 어렵다면, 이번 개정에서 조항을 없애고 앞으로의 학생자치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개정해도 될 것.

## 1.2. 법조대리인의 참여 관련 조항

-총학생회: 법조대리인 참여가 불가하다는 조항을 삽입할 수는 있으나, 이로 인해 이 회칙에 의한 절차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할 경우 사후 처리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. 회칙에 의한 절차를 거부할 경우 징계위원회 회부가 가능한 인권센터로 송부하는 것이 최후의 대안이 될 것. (동아리연합회: 관련 내용을 회칙에 글로써 명시하는 것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피드백 필요.//총학생회: 재질의할 것.)

## 1.3. 이외 조항에 대한 피드백

-동아리연합회: 3장 9조 공동체적 해결 관련 공론의 장의 필요성, 공동체적 인식을 높이기 위한 간단한 토론 정도로 정의되어야 할 것. 해당 사건이 개인 간의 문제가 아닌 단체의 의식과 관련한 문제이므로 정해진 조항이라고 생각. 사건처리 자체를 공론의 장에서 하는 것이 아님을 명기해야 함.

-인문대학: 8조 3항 존중받을 권리에 있어서 피해당사자와 가해당사자가 동일해진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. 가해자에 대한 권리를 '확정적인 가해자로 취급받지 않을 권리' 등으로 수정하는 것은 어떤지? (동아리연합회: 모욕을 받지 않을 권리는 둘 다에게 있는 것. 이외 권리는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것.//사회과학대학: 해당 권리는 공통적인 권리로 올리는 것이 합당.)

## 2. 2018-2 전체학생대표자회의

: 9월 11일 진행 예정. 9월 1일 관련 공고와 전학대회 자료집 및 반성폭력회칙 개정 자료 업로드 예정.

## 3. 예산자치제 관련

: 1학기 예산자치제 대상 단위, 9월 첫 중운위에서 면담 예정. 2학기 예산자치제 9월 셋째 주에 진행되므로 긴급중운위 개최 가능. 예산자치제 개정과 관련하여 논의하는 자리 필요.

## □ 기타 안건

### 1. 2018-2 개강인사

: 9월 3일, 후문 부근 진행.

### 2. 인권문화제

: 날짜 미정, 9월 중 진행.